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0. 10. 19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9. 4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(2020. 10. 19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김희주)

- 가. 제안이유
 -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1년도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출연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 - 출연근거
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
 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 - 「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(출연금 요구서)」
 - 출연내용 :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
 - 출 연 금 : 18,500천원

○ 세부내용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2021 요구액	2020당초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6-01 출연금	18,500	18,500	0	-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18,500	18,500	0	-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¹⁾제3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특히 출연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는 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²⁾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-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액 기준은 공단의 매출액, 직원수, 자산 등 가중치를 두어 분담금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 매년 우리 구에 통보되었으며 2021년 출연금은 1천 8백5십만원으로 2020년도와 동일한 금액임.

1)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지방공기업법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. 끝.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9. 4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기획예산과

1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1년도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사결정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
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[편성목 306 출연금 세부사항(P.117)]
- 「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(출연금 요구서)」
[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-3931(2020. 8. 14.)]

다. 출연내용 :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

라. 출연금 : 18,500천원

마.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2021 요구액	2020당초예 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6-01 출연금	18,500	18,500	0	-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18,500	18,500	0	-

- 붙임 1. 산출내역 1부.
 2. 관련법령 1부.
 3.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1부. 끝.

[붙임1]

산 출 내 역

□ 산출근거

- 「지방공기업평가원 2021년 출연금 요구안 협의결과 통보」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265(2020.8.11.)
- 「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」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3931(2020.8.14.)

□ 분담기준

- 가중치 : 매출액 0.5, 직원수 0.3, 자산 0.2
- 각 구간별로 9,000천원씩 증가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은 4,000천원 감경

< 출연금 산정금액 및 가중치 >

구간	직원수	매출액 및 자산	산정금액 (천원)	가중치		
				직원수	매출액	자 산
0.5	50명 이하	-	1,500	해 당 없 음		
1	51 ~ 150명	10억원 미만	9,000	0.3	0.5	0.2
2	151 ~ 300명	10억원이상 ~ 100억원미만	18,000			
3	301명~1,000명	10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	27,000			
4	1,001명~2,000명	500억원이상 ~ 1,000억원미만	36,000			
5	2,001명 이상	1,000억원 이상	45,000			

□ 분담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기 관	직원수(0.3)		매출액(0.5)		자산(0.2)		기초 감경	배정액
	구간	금액	구간	금액	구간	금액		
강남구도시관리공단	2	5,400	3	13,500	2	3,600	-4,000	18,500

□ 세부산출내역

- 산출식 : $(18,000\text{천원} \times 0.3) + (27,000\text{천원} \times 0.5) + (18,000\text{천원} \times 0.2)$
 $- 4,000\text{천원} = 18,500\text{천원}$

- 각 소계의 합(D) - 기초단체 감경분 = 총 배정액 (단위 : 천원)

해당분야	구간	산정금액(A)	가중치(B)	소 계 (A×B=C)	기초단체 감경분	총 배정액
직원수	2	18,000	0.3	5,400		
매출액	3	27,000	0.5	13,500		
자산	2	18,000	0.2	3,600		
소계의 합(D)				22,500	- 4,000	18,500

[붙임2]

■ 관련법령

○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지방공기업법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“평가원“이라 한다)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1.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: 재정력, 공기업 수 등
2.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: 매출액, 직원 수, 자산 등

■ 관련규정

○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306 출연금(p.117)

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 한국지방세연구원,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

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

□ 기관현황

- 설립일 / 위치 : 1992. 3. 9. /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-6
- 조직구성 : 1실 1본부 1센터(임원 12 / 직원 35 / 전문연구인력 380)

□ 출연목적 : 지방공기업 각종 지원사업 수행

-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영평가 실시
 -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평가급 차등 지급
 -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
 - 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의 경영평가
-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지방공기업 현안 해결
- 각종 교육을 통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
-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당면현안에 대한 경영컨설팅으로 경영개선 유도
-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실시
(내부만족도 조사,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성화, 각종 박람회 운영·지원 등)

□ 2021 출연금 규모

- 총 **43.7**억원(시·도 : 10.1억원, 지방공사·공단 : 33.6억원)

□ 2021 주요 사업계획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
정 책 연 구	연중	• 정책연구과제 수행(35개 과제)
경 영 평 가	3~12월	• 행정안전부 위탁 : 광역 및 기초공기업 경영평가(160개 기관)

타 당 성 검 토	연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(36개 과제)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(6개 과제) 출자·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(6개 과제)
교 육 연 수	연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원과정(990명) 지방공사공단과정(2,050명) 공통과정(2,730명) 출자·출연기관 과정(550명) 특별 및 위탁과정(1,000명) 사이버교육(3,000명)
컨 설 팅	연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층 컨설팅(35개 기관) 맞춤형 컨설팅(30개 기관)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(5개 기관) 피드백 컨설팅(25개 기관)
기 타 시·도 지 원 사 업	연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공기업 핵심인력 교육비 지원 지방공기업 내부만족도 조사 지원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·운영 박람회, 토론회 개최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

□ 2021 세부 세입·세출 전망

<세 입>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 예산액	산출근거
출 연 금	4,367,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도 출연금(17개 시도) : 1,014,000 지방공사·공단 출연금(150개 기관) : 3,353,200
경 영 평 가	3,107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위탁 : 3,107,000
고객만족도조사	1,947,51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(370개 기관)
교 육 연 수	1,878,7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원과정(990명) : 283,481 지방공사공단과정(2,050명) : 587,007 공통과정(2,730명) : 781,722 출자·출연기관 과정(550명) : 157,490 특별 및 위탁과정(1,000명) : 69,000

타 당 성 조 사	3,804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- 36개과제×80,000(단가) = 2,880,000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- 6개과제×77,000(단가) = 462,000 지방 출자·출연 설립 타당성 검토 - 6개과제×77,000(단가) = 462,000
컨 설 팅	15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자·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
기 타 수 입	79,7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대료 수입 - 16,940×2층×2월 = 67,760 운영자금 이자 : 12,000
합 계	15,334,173	

〈세 출〉

[단위 : 천원]

지출항목	지출 예산액	산출근거
경 영 평 가 사 업 비	2,142,691	◦ 보상금, 여비, 회의비, 수용비 등 '20년 당초 예산 적용
고객만족도조사비	1,606,284	◦ 실사비, 여비, 회의비, 수용비 등 '20년 지출 비율 적용
교 육 연 수 사 업 비	1,579,810	◦ 강사수당, 수수료, 수용비, 여비 등 '20년 지출 비율 적용 (무료교육 확대)
타 당 성 조 사 사 업 비	2,048,256	◦ 보상금, 여비, 회의비, 수용비
정 책 연 구	499,748	◦ 정책연구과제 35건 수행, 외부인건비 등
컨 설 팅	754,490	◦ 심층·맞춤형·신설·피드백 컨설팅 등
정 책 포 럼	50,000	◦ 매년 1회 개최, 기조발표 수당, 임차료, 토론수당 등
지 방 공 기 업 발 전 지원사업비	279,469	◦ 지방공기업의 날 포상, 학술대회, 통계집 지원 등
기 타 지 원 사 업	627,4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조사 협의회 지원, 우수사례집 발간 등
인 건 비	3,809,786	◦ 기본연봉, 평가급 등 * 총 49명
직 무 수 행 경 비	96,696	◦ 직책급 업무추진비(실·팀장)

퇴 직 급 여	330,915	◦ 퇴직지불준비금
기 본 운 영 비	1,393,357	◦ 공통수용비, 소모품비, 수당, 세금과공과금, 지급수수료, 부담금, 차량비, 회의비, 여비, 시책업무추진비, 홍보행사비, 교육훈련비, 복리후생비, 사업일용임금, 청사관리비 등
기 타 비 용	42,050	◦ 공기구 : 18,000(컴퓨터, 모니터 등 5대) ◦ 비 품 : 14,050(캐비닛, 이동서랍 등) ◦ 학자금대여 : 10,000(5,000×1명×2회)
예 비 비	73,181	
합 계	15,334,173	